

옥천군 공고 제2021-1128호

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9월 30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조례 규정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정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규정 정비,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, 개정된 인용조문 정비 및 한자어 등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: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(안 제2조) 「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 중 상위법령 개정 반영
(안 제5조) 「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(안 제7조) 「옥천군 수입증지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(안 제8조) 「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(안 제11조) 「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(안 제11조) 「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(안 제15조) 「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

○ 상위법령 위반 조문 정비

(안 제1조) 「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」 중 불합리한 용어 및 불필요한 대항 규정(별표) 정비

(안 제4조) 「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」 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

(안 제9조) 「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

(안 제12조) 「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용어 정비

○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(2건)

(안 제1조) 「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」 중 불합리한 용어 및 불필요한 대항 규정(별표) 정비

(안 제8조) 「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○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

(안 제1조) 「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」 중 불합리한 용어 및 불필요한

대행 규정(별표) 정비

(안 제8조) 「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○ 한자어 및 맞춤법 등 용어 정비

(안 제1조) 「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」 중 불합리한 용어 및 불필요한 대행 규정(별표) 정비

(안 제3조) 「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」 중 불합리한 용어 정비

(안 제5조) 「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(안 제6조) 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

(안 제7조) 「옥천군 수입증지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(안 제10조) 「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

(안 제11조) 「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(안 제12조) 「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용어 정비

(안 제13조) 「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 및 용어 정비

○ 자치법규 개정사항 반영: 「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
(안 제6조) 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

(안 제8조) 「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중 상위법령(제명) 개정 반영

및 용어 정비

(안 제10조) 「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

(안 제14조) 「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설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중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
4. 의견제출

- 「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자우편(이메일) : HSH84120@korea.kr

전화 : 043)730-3084, FAX : (043)731-1984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- 「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」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기타 규정에 의한”을 “그 밖의 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단서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 및 제8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2조(「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이바지하고자”를 “이바지하고자 「지방공무원법」 및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5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영 제10조제2항”을 “법 제75조의2제2항”으로,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”을 “법 제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”를

“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제2호”로, “들을 수 있다”를 “들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

제3조(「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 전단 중 “경질되었”을 “바뀌었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조(「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0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”을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9조제6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장부 기타”를 “장부나 관련”으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

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의 개정)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8호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 「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”을 “ 「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자중”을 “자 중에서”로 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(「옥천군 수입증지 조례」 의 개정)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전단 중 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”을 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(「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의 개정)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4항 중 “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”을 “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”으로 한다.

제48조 중 “경우에는 「옥천군 건축조례」 ”를 “경우에는 「옥천군 건축조례」 ”로 한다.

제55조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”로 한다.

제9조(「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(「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「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경질시”를 “변경시”로 한다.

제12조 단서 중 “단,”을 “다만,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외 하고는”을 “제외하고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“가 내지 다목”을 각각 “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9조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어나”를 “어느”로 한다.

제30조제2항 본문 중 “수입증지 또는 전자수입증지”를 “현금, 수입증지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”로 한다.

제13조(「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「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 「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「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」의 개정)

[별표] <개정 2016. 3. 10.,2017.11.3.>

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

| 분야별 | 위원회명 | 근거법령 |
|-------|--|--|
| 기획감사실 | 1.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 |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8조 |
| 자치행정과 | 1. 옥천군공무원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2.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 3.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| 옥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 조례 제23조 옥천군 제안제도운영조례 제12조 옥천군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규정 제12조 |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1조(「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」의 개정)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옥천군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<u>기타</u> <u>규정에 의한</u>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, 심의, 연구, 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제3조제 8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<u>기타</u> <u>규정에서</u>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3조(결정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그 밖</u> <u>의</u> <u>규정에</u>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- <u>그</u> <u>밖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결정사항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|

| | |
|---|---|
| <p>3. 법령 또는 <u>기타</u>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8. 법령 또는 조례 및 <u>기타</u>의 규정에 따라 설치, 운영토록 한 위원회 중 <u>군정조정위원회</u>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할 사항 및 “<u>별표</u>”에서 정한 사항</p> <p>9. (생략)</p> <p>10. 삭제</p> <p>11. <u>기타</u>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</p> | <p>3. ----- <u>그 밖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그 밖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|
|---|---|

제2조(「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<u>이바지하고자</u>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이바지하고자</u> 「<u>지방공무원법</u>」 및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|
| <p>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</p> | <p>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</p> |

| | |
|---|---|
| <p>등) ① 옥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제3조(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)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천군 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가 심의한다.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1.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</p> <p>2. (생략)</p> | <p>등) ① ----- -----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5조의2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) 법 제75조의2제2항----- ----- ----- 법 제7조제1항----- ----- ----- -----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제2호----- ---- 들어야 한다.</p> <p>1.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|---|

제3조(「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이장의 업무) ① (생략) | 제2조(이장의 업무) ① (현행과 같 |

| | |
|---|--|
| <p>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</u>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</p> <p>제3조(복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이장이 <u>경질되었을</u>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, 인수자,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.</p> | <p>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 ----- --</p> <p>제3조(복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바뀌었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---|--|

제4조(「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8조(지원신청 및 이의신청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</u></p> | <p>제8조(지원신청 및 이의신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|

제5조(「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4조(업무 및 기능)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기타</u>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 | <p>제4조(업무 및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|
| <p>제5조(이용대상)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,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</u>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.</p> | <p>제5조(이용대상) ----- -----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</u> ----- -----.</p> |
| <p>제7조(위탁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, 수탁자 부담금 및 <u>기타</u>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 | <p>제7조(위탁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 |
| 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<u>의한</u>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</p> |
| <p>제11조(감독)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</p> | <p>제11조(감독) ① ----- -----</p> |

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4조(운영규정) 제13조에 따라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4. 기타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, 「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----- 장부나 관
련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운영규정) -----
----- 각 호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-----

제15조(준용) -----

-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
리에 관한 훈령」-----
-----.

제6조(「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 ~ 7의2. (생략)</p> <p>8. <u>집단급식소(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)의 급식시설 개수·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</u></p> <p>8의2.·9. (생략)</p> | <p>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.</p> <p>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8의2.·9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「<u>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 | 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「<u>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 --.</p> |
| <p>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</p> | <p>제7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|
| <p>제10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옥천군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영위 하는 <u>자중</u>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</p> | <p>제10조(용자대상) ----- ----- ----- <u>자 중</u>에 <u>선</u> -----</p> |

| | |
|--|---|
| <p>로 한다.</p> <p>제12조(용자한도 및 상환조건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기타</u> 용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| <p>-----.</p> <p>제12조(용자한도 및 상환조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|
|--|---|

제7조(「옥천군 수입증지 조례」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7조(수입증지대금의 납부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제3조제2항에 따른 현금납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로 수납한다. 이 경우 납부서에 별표 1의 수납인으로 소인하며, 제증명의 앞면 또는 뒷면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.</p> <p>제8조(수입금의 정산) ① (생략)</p> <p>②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, 민원처리시스템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<u>의하여</u>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, 결산</p> | <p>제7조(수입증지대금의 납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제8조(수입금의 정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따라</u> -----</p> <p>-----</p> |

| | |
|---|---|
| <p>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,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“결손” 소인을 하되, 소인된 면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및 무인발급기, 민원처리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</p> | <p>-----.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 <u>그 밖에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|
|---|---|

제8조(「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33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할 수 있다.</p> <p>제48조(건축위원회의 심의)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옥천군 건축조례」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| <p>제33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48조(건축위원회의 심의) -----</p> <p>----- <u>경우에는</u></p> <p>----- 「옥천군 건축 조례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|

| | |
|--|--|
| 제55조(사용허가의 취소) 군수는 <u>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</u> | 제55조(사용허가의 취소)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</u> ---- ----- --. |
|--|--|

제9조(「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3조(위원회 설치) ① (생략) <u>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정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,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 | 제3조(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|
| 제8조(의견청취) ① (생략) <u>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(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</u> | 제8조(의견청취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|

제10조(「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6조(회계공무원 임명)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「<u>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을 준용한다.</p> | <p>제6조(회계공무원 임명) ----- ----- 「<u>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</u>」----- -----.</p> |
| <p>제8조(용자 및 보조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용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채권관리관 <u>경질시</u> 용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제8조(용자 및 보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변경시</u>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2조(자금의 전용금지)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.<u>단</u>,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기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| <p>제12조(자금의 전용금지) ----- ----- ----- . <u>다만</u>,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
제11조(「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」
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간접지원사업” 및 “직접지원사업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<u>의한</u> 지원사업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조(적용범위)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<u>제외하고는</u>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| 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외</u> <u>하고는</u>----- -----.</p> |
| <p>제12조(사업의 시행) 주민지원사업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및 「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2조(사업의 시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</u> ----- ----- -----.</p> |

1.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·면장이 직접 시행한다. 다만,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.

가. ~ 다. (생략)

라.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

2.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·면장 감독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라.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기 자재 등

3. ~ 6. (생략)

제17조(사업비 반환) ① 지원사업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수 또는 해당 읍·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1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 정-----

2. -----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 정---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사업비 반환) ① -----
----- 따라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| | |
|---|--|
| <p>제19조(사후관리) 군수 또는 읍·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위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 단, 가전제품·공과금지원 등의 직접지원사업과 소모성 물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제19조(사후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---|--|

제12조(「옥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제6조(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)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화에 의한 추첨, 공개추첨, 접수순서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,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 할 것.</p> <p>4. 다음 각 목의 <u>어나</u> 하나에 해</p> | <p>제6조(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다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----- <u>어느</u> -----</p> |

| | |
|--|--|
| <p>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 가능함)</p> <p>제13조(환급금처리) 제11조에 따 른 환급금은 「지방자치단체 예 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처리한다.</p> | <p>----- ----- -----) 제13조(환급금처리) 제11조에 따 른 환급금은 「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라 처리한다.</p> |
|--|--|

제14조(「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
례」의 개정)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9조(수수료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수수료 징수절차는 「옥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」을 따른다.</p> | <p>제9조(수수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「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 -----.</p> |

제15조(「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12조(회계관리)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」을 준용한다.</p> | <p>제12조(회계관리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 리에 관한 훈령」----- -----.</p> |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5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(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(시·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)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, 절차,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
3.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[시행일 : 2021. 12. 9.] 제75조의2

□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

제10조(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2.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

[시행일 : 2021. 12. 9.] 제10조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

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8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| 의견 |
|-----|----|
| | |